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제정이유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교통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이 융복합 되면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모빌리티(Mobility)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그간 획일적 노선·시간의 공급자 관점이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는 이동성의 극대화가 강조되고 있음. 특히, 자율차, UAM 등 미래 서비스 등장과 더불어 기존 산업이 혁신기술을 만나 자동화, 플랫폼화 되면서 기존 교통 서비스 질도 개선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 경제의 근간이자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서 모빌리티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이에, 미래 교통혁신을 선도하고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발굴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기술혁신을 교통체계·서비스에 접목하려는 시도와 경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감히 규제를 혁신하며, 선제적인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민간의 모빌리티 혁신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381호, 2023. 4. 18. 공포, 2023. 10. 19. 시행)됨에 따라, 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방법, 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 기준·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 절차 및 지정취소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실증특례 연장신청 방법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

다. 법률에서 위임한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라. 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 대상, 기준 및 절차를 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기획재정부와 별도 협의

다. 합 의 : 정부부처, 지자체 의견조회 실시(20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제정안 전문

2) 입법예고(. .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모빌리티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① 「모빌리티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의 전문성과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지

원센터가 법 제7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하고, 시정기간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그 지정을 취소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 ① 「모빌리티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규제확인 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 등)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모빌리티 실증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조제6항에 따른 모빌리티 실증특례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신청서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모빌리티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모빌리티 실증특례 연장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0조제5항에 따른 실증특례 연장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10조제7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 법 제1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데이터를 제출하면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실증사업자 및 법 제15조에 따라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비밀 유지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

제8조(전문인력 협력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협력기관(이하 “전문인력 협력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모빌리티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학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모빌리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5. 그 밖에 모빌리티 관련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전문인력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의 전문성과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협력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협력기관이 법 제17조제3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하고, 시정기간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그 지정을 취소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협력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이내
신청인	기관명·단체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기관·단체 요건	()	다음에서 신청인이 해당하는 기관 등의 번호를 괄호 안에 적습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빌리티 혁신의 효율적 지원에 필요한 인력·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운영규정 2.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센터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3. 인력배치계획서 및 자금조달·집행계획서 4. 모빌리티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제 호

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서

1. 기관·단체의 명칭:
2. 기관·단체의 대표자:
3. 소재지:
4. 지정 기간:

「모빌리티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 기관·단체를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규제확인 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	-----

신청인	이름(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 서비스 및 기술	명칭		
	유형	[]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인 경우	
		[] 새로운 모빌리티 기반시설인 경우	
		[]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인 경우	
	주요내용		

소관 행정기관 및 관련 허가· 승인·인증·검증· 인가 등 (아는 경우 기재)	예상되는 행정기관
	예상되는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과 관련된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붙임 서류	1.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과 이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설명서 2.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이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	--

처리 절차

해당 법조문	처리 절차	서식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규제 신속확인 신청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과 관련된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의 필요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별지 제3호 서식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수탁기관)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국토교통부 소관인 경우에는 직접 검토 국토교통부 소관이 아닌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서 사본과 첨부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부터 제5 항까지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 검토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 검토 30일 이내에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의 필요 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관 업무가 아니거나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수탁기관)이 신청자에게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의 필요 여부를 통보	별지 제4호 서식

규제확인 결과 통지서

신청인	이름(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	
새로운 모빌리티수단· 기반시설· 서비스 및 기술	명칭	
규제확인 결과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 필요합니다.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첨부(관계 법령 포함)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안내 사항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확인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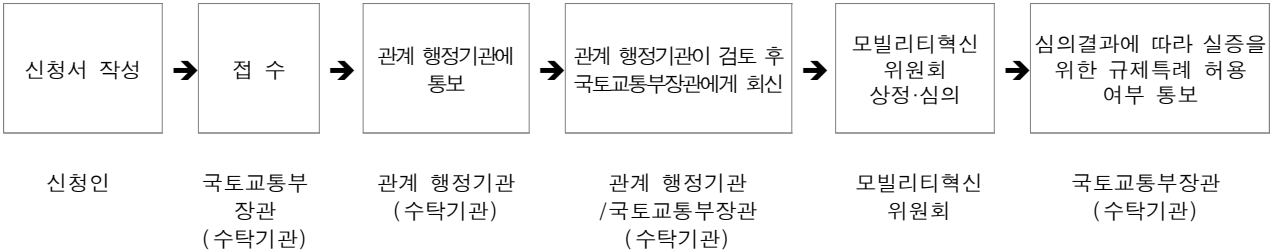
실증특례 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 서비스 및 기술	명칭		
	유형	[]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인 경우	
		[] 새로운 모빌리티 기반시설인 경우	
		[]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인 경우	
[]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인 경우			
주요내용			
신청사유	[]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경우		
	[]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내용	실증특례 법령		
	구역		
	기간		
	규모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붙임서류	1.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가.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을 활용한 실증의 목적과 개요 나.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과 관련된 법령 및 실증특례가 필요한 사항 다.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의 시험·검증의 방법 라.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의 실증특례의 구역, 기간 및 규모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이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4.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5.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관한 자료 6.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의 실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관한 자료 7.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에 관한 자료
------	--

처리 절차



실증특례 (연장) 확인서

제 호		실증특례 확인 연월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		
확인내용	명칭		
	주요내용		
	유효기간		
	실증특례 법령		
	구역		
	기간		
	규모		
	조건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에 따라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서 안전성 등의 확보를 위해 불인 조건을 말합니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6항 및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 (연장)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신청인	이름(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 서비스 및 기술	명칭			
	유형	☐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인 경우 ☐ 새로운 모빌리티 기반시설인 경우 ☐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인 경우 ☐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인 경우		
	주요내용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	책임보험 가입을 위해 상담한 보험사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이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9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유를 제출합니다.

의
에
도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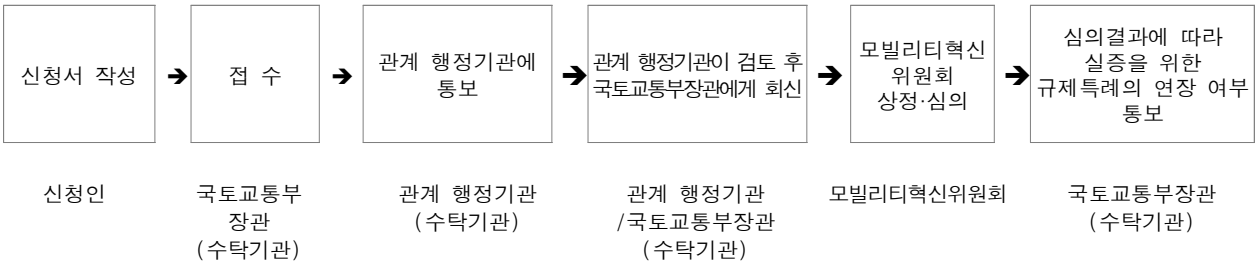
불임서류	1.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 및 이를 증빙하는 자료(보험사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수신한 공문서, 전자우편 등의 자료) 2. 실증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방법·기준 및 절차 등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포함한 손해배상 계획서
------	---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 기반시설· 서비스 및 기술	명칭		
	유형	[]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인 경우	
		[] 새로운 모빌리티 기반시설인 경우	
		[]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인 경우	
		[]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인 경우	
주요내용			
기존 실증특례 확인내용	확인번호		유효기간
	실증특례 대상 법령		
	구역		
	기간		
	규모		
	조건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에 따라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서 안전성 등의 확보를 위해 불인 조건을 말합니다.		
유효기간 연장	연장신청사유		
사유 및 기간	기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붙임 서류	1.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사본		
	2.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3.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5. 그 밖에 실증특례 연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처리 절차



법령정비 요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 서비스 및 기술	명칭		
	유형	[]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인 경우	
		[] 새로운 모빌리티 기반시설인 경우	
		[]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인 경우	
		[]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인 경우	
주요내용			
기존 실증특례 확인내용	확인번호		유효기간
	실증특례 대상 법령		
	구역		
	기간		
	규모		
	조건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에 따라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서 안전성 등의 확보를 위해 붙인 조건을 말합니다.			
법령정비 요청내용	정비요청 법령(신청인이 정비를 요청하는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을 모두 기재)		
	신청인의 의견(법령정비 요청 이유, 제정·개정 방향 등을 포함하여 기재)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귀하
접수기관의 장

붙임서류	1.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2.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에 따른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3.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그 밖에 법령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 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5.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실증을 계속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

신청인	이름(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새로운 모빌리티	명칭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	주요내용			
법령정비 요청내용	정비요청 법령			
	신청인의 의견			
법령정비 판단결과	☐	1. 「 . . . 」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2. 「 . . . 」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이내
신청인	기관명 · 단체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기관 · 단체 요건	()	다음에서 신청인이 해당하는 기관 등의 번호를 괄호 안에 적습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모빌리티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학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모빌리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모빌리티 관련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협력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학칙,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운영규정 2. 모빌리티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또는 모빌리티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지정서 발급
--------	---	-----	---	-----	---	-----	---	--------

신청인

처 리 기 관 :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시·군·구

제 호

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서

1. 기관·단체의 명칭:
2. 기관·단체의 대표자:
3. 소재지:

「모빌리티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위 기관·단체를 전문인력 협력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